

투자자문계약

_____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과 다원자산운용(주)(이하 "회사"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투자자문의 대상)

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에 규정된 증권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5 조에 규정된 파생상품
3.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

제 3 조 (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)

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
2.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
3.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, 종목, 수량, 가격, 매매방법,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
4. 국내외 경제동향,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
5.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

제 4 조 (계약의 유효기간)

-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“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제 5 조 (투자자문 제공방법)

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,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(전용어플리케이션 등),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.

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,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.

제 6 조 (투자자문수수료)

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.

1.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<별지>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(이하 “기본수수료”라 한다)를 회사에 지급한다.

2.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<별지>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 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.

3.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.

4.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<별지>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회사의 신의성실의무)

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)

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.

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(전자)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

한다. 다만, 투자자문인력의 사망·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⑤ 회사는 제 4 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시에는 “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고객이 제 5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⑦ 고객은 제 4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9 조 (비밀유지의무)

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.

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,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 10 조 (통지의무)

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.

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<별지>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)

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.

제 12 조 (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)

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,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.

제 13 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

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회사의 금지행위)
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투자자로부터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보관·예탁을 받는 행위
2. 투자자에게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3.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
4.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5.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 3 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

제 15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)

-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,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)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
 2.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,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

제 16 조(청약의 철회)

- ① 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<별지>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제 17 조(위법계약의 해지)

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약관의 변경 등)

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분쟁조정)

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20 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1 조 (관계법규등 준용)

-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‘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’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,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고객 :

주 소 :

주 민 등 록 번 호 :

성명 (대표이사) : (인)

회사 :

상 호 : 다원자산운용 주식회사

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5, 주택건설희관 3층

대표이사 : 정진욱 (인)

<별 지>

세부계약조건

1. 계약기간 :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

2. 투자자문 금액 : 원

3. 투자자문수수료

☐ 기본수수료 : 투자자문금액 원본의 연 1 %(부가세 포함) : 원

□ 성과수수료 :

4.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:

☐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,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및 중도해지일로부터 7 일 이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.

☐ 수수료 입금계좌 : KB 국민은행 400437-01-021956 / 계좌명: 다원자산운용주식회사

5. 투자자문담당자 : 정진욱

6. 거래증권회사 계좌

□ 거래증권회사명 :

□ 계좌번호(계좌명) :

□ 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:

☐ 주문담당자 E-Mail :

7.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(우편 또는 E-mail 중 선택 가능)

□ 주 소 :

□ 전 화 :

☐ E-Mail :

8. 그 밖의 사항

☐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: 중도해지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%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다원자산운용(이하 '회사'라고 함)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,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

1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(1)개인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전자우편 주소

(2)부가정보: 자산 및 소득 현황/예상치, 투자경험, 투자목적, 투자위험성향, 금융지식 이해도, 계좌관련 정보
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**자문계약, 계약기간 동안의 연락확인, 자료 발송 등 계약 및 운용관련 목적**으로만 이용됩니다.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고객님의 개인정보는 **자문계약 시점으로부터 계약만료 후 최대 5년간 보관**됩니다. 또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4. 동의 거부의 권리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에 거부할 경우 본 사의 투자일임 서비스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귀사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열람하였으며, 이에 동의 합니다.

20 년 일 일

성명 : (인)